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 726 호

2006년 12월 8일 금요일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831호(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 3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832호(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 5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833호(인천광역시남동구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 9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834호(인천광역시남동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41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1386호(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45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1387호(2007년동계부업대학생모집공고) 60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1391호(시설공사입찰공고(긴급)[개발제한구역내경계표석설치공사]) 61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1392호((긴급)용역입찰공고[개발제한구역내경계표석설치측량용역]) 64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1396호(차량초과에따른자동차말소등록예고) 67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1401호(인천광역시남동구지하수조례제정(안)입법예고) 70

고 시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6-59호(가스관련검사기관에의권한위탁및검사대행에관한고시) .. 85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6-60호(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고잔동소1-1호선)사업시행자변경지정고시) 87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6-61호(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고잔동소1-1호선)실시계획(변경)인가(비관리청)고시) 88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조	례
---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6년 12월 8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83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 · 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등의 규정에 위임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규정하여 자치 입법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인 수)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는 우리구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의 부과 · 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의 설치 · 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제3조(연서 주민수 공표) ①제2조 규정에 의한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연도

별로 산정하되,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인구 통계에 의한다.

②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1월10까지 19세 이상 주민 총수와 연서 주민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처리) ①이 조례 이외의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다.

②사무처리에 필요한 사무분장 등 행정 내부 절차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2006.1.11 법률 제7846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06.6.29 대통령령19566호)의 개정으로 2006년도까지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시 연서 주민수를 법령에 규정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연서 주민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연서 주민수 등을 규정하고자 함임

□ 주요내용

-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인 수를 “우리구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규정
- 주민 총수 및 연서 주민 수 기준과 공표에 관한 사항 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6년 12월 8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83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요율)중 [별표1] 의 (증명)중 4.지방세에 관한 증명란에

“(1)세목별 과(납)세 증명 1통 300원” 및 “(2)납세완납(징수유예,비과세) 증명 1통 300원”의 수수료를 각각 “800원”으로 한다.

6.기타 제증명란에 “(1)개별공시지가 확인원 1건 300원”및 “(2)개별 주택가격확인서 1통 300원”을 각각 “800원”으로 하며

“(3)공동주택가격확인서 1통 800원”의 수수료를 신설하고 “(3)내지(4)를 (4)내지(5)”로 한다.

[별표1]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중

3.건설 및 도시계획관계란에 “(12)토지이용계획의 확인 및 열람 가.확인 1필지 1,000원”의 수수료를 “1,000원(칼라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한다.

6.공중위생관계란에 “(1) 이·미용사 신규면허 1건 2,300원”의 수수료를

“5,500원”으로 하고, “(2)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1건 2000원”의 수수료를 “3,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제증명 등 수수료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증명)				(증명)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방세에 관한 증명				4.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납)세 증명	1통	300원		(1) 세목별 과(납)세증명	1통	800원	
(2)납세완납(징수유예, 비과세)증명	1통	300원		(2)납세완납(징수유예, 비과세)증명	1통	800원	
5. (생략)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제증명				6. 기타 제증명			
(1)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1통	300원		(1)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1통	800원	
(2)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통	300원		(2)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통	800원	
(신설)				(3)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통	800원	
(3) (생략)				(4) (현행과 같음)			
(4) (생략)				(5)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구분	기준	요액	비고	구분	기준	요액	비고
(인가·허가·신고·신청 등록·지정·확인 등)				(인가·허가·신고·신청 등록·지정·확인 등)			
1. ~ 2. (생략)				1. ~ 2.(현행과 같음)			
3. 건설 및 도시계획 관계				3. 건설 및 도시계획 관계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토지이용계획의 확인 및 열람				(12) 토지이용계획의 확인 및 열람			
가. 확인	1필지	1,000원		가. 확인	1필지	1,000원	
				※ 칼라 발급 또는 도면 첨부 경우 1,500원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4. ~ 5. (생략)				4. ~ 5.(현행과 같음)			
6. 공중위생관계				6. 공중위생관계			
(1) 이·미용사 신규면허	1건	2,300원		(1) 이·미용사 신규면허	1건	5,500원	
(2)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1건	2,000원		(2)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1건	3,000원	
(3) ~ (9) (생략)				(3) ~ (9) (현행과 같음)			

이 조례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안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하고,
-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10조의2 개정(대통령령 제19111호 05.11.1)에 따른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 발급에 대하여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조정 (안 제3조의 별표1)
 - 세목별 과(납)세 증명, 납세완납(징수유예,비과세)증명,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개별주택가격확인서 : 1통 800원
 -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신설 : 1통 800원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1통 1,000원(칼라 발급 또는 도면 첨부
의 경우에는 1,500원)
-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 조정(안 제3조의 별표1)
 - 이·미용사 신규면허 : 1건 5,500원
 -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 1건 3,000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6년 12월 8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83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배치 운영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업무를 전담 수행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 되지 않도록 하며 공정과세 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라 함은 세무부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고충민원"이라 함은 세무부서의 위법 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 부작위, 소극적인 행위 및 불합리한 지방세 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세무부서"라 함은 세무담당부서를 말한다.

4. “세무부서장”이라 함은 세무부서의 장을 말한다.

②제1항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및 「국세기본법」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2장 납세자보호관

제3조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인천광역시남동구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은 세무부서 이외의 부서에 1인 이상을 둘 수 있다.

②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을 둘 수 있다.

제4조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를 세무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납세자보호관의 적격여부에 대한 감사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2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 6급 이상
2. 경력기준 : 당해직급 세무경력 5년 이상
3. 청렴성·업무처리능력 및 친화력이 우수한 직원으로서 납세자로부터 신망을 받을 수 있을 것

② 제3조제2항에 의한 납세자보호담당은 세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친절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자를 우선 배치한다.

제5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정·호소 등 세금관련 각종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세무상담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
4. 고충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지도·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지방세행정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

제6조 (세무부서장의 고충민원처리 특례) ①고충 청구금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5조 본문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무부서장이 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부서장이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제3장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며, 고충민원을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납세자보호관은 제5조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 있는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과세처분중지명령권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세무조사 중지 명령권
3.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 있는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권
4.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5.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권 및 질문·조사권
6.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그 이행여부 심사권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권한은 『과세처분·세무조사중지명령 및 시정·소명요구서(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세무부서장에게 행사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중지·세무조사의 중지·처분의 시정·처분의 소명을 요구받은 해당 세무부서장 등은 과세처분의 중지 등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5호의 권한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행사하고, 같은 항 제6호의 권한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행사한다.

제8조 (인사우대 등) ①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이하 "납세자보호관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승진 등 인사상에 있어서 우대한다.

②납세자보호관 등의 고충민원 처리실적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자를 승진 자 선발 시 우대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실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 (납세자보호관 등의 교육) 납세자보호관 등은 정기적으로 친절교육 및 직무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납세자보호관 등의 복무자세) ①납세자보호관 등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공명정대한 세무행정 구현에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 등은 납세자에게 항상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 등은 지방세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숙지하는 등 부단히 연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납세자보호관실 환경) 납세자보호관실은 민원인이 이용하는

데 가장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되, 부득이 한 경우 자체실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제3장 고충민원 처리

제1절 통 칙

제12조 (고충민원 처리준칙) ①지방세공무원은 「지방세법」에 의한 불복절차 등을 경유하지 아니하고도 직권시정이 가능한 세금과 관련된 고충은 신속하게 시정조치 함으로써 국민이 지방세행정에 대하여 신뢰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방세공무원은 부과된 세금에 대한 사후구제에 국한하지 않고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납세자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지방세공무원은 지침 등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집행으로 납세자의 개별적인 사정이 소홀히 취급됨으로써 발생하는 고충은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지침 등을 보완하여 고충 발생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지방세공무원은 지방세행정과 관련된 납세자의 모든 고충은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봉사자세를 확고히 하고, 공평무사한 업무처리로 그 과정과 결과를 누가 보든지 공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 부당한 처분·처리·요구가 예상되는 사항
2. 당초의 처분·처리·요구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부

당하여 즉시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3. 당초 처분·처리·요구내용이 현저하게 형평을 잃어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
4. 당초의 사실조사나 확인이 미진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당초의 처분이나 처리시 지침·기준 등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개별적인 사실조사나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준적용을 위한 기초자료의 확인이 미진하여 재조사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
6. 부작위·소극적 행위 등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사항
7. 기타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되어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

제14조 (고충민원의 제외대상) ①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고충민원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인이 새로운 증빙 또는 거증자료를 첨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처분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고충민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지방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2.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3. 행정자치부장관, 감사원장, 인천광역시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하여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세금관련 고소 및 고발
5.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②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다

른 방법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상세히 지도·안내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고충민원의 분류) 구청장이 처리하여야 할 고충민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1. 구청장이 조사하거나 결정한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2. 구청장의 처분·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3. 기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 (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의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구청장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20일(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처리기간에도 불구하고 사실확인, 현지조사, 관련부서 의견조회, 법령 자문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20일 범위 내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처리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발생으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유서를 붙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에 관한 서류(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고충민원은 구청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조사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고충처리기한연장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한연장사유, 현지조사 등의 소요일수,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고충내용에 대한 구청장의 결정이 있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9조 (불이익 변경금지) 구청장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당초 처분보다 민원인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20조 (불복대상에서 제외)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지방세법」 제72조에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2절 구청장의 고충민원 처리

제21조 (고충민원서류의 접수 및 이송) ①구청장에게 제출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②다른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구청장의 선람 후 즉시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12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2조 (고충민원 처리안내) 민원인이 납세자보호관과 상담 후 고충

민원을 접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및 처리방향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23조 (해당 세무부서 의견조회) ①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별지 제4호 서식)』에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에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당해 고충민원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서(별지 5호 서식)』에 의하여 그 의견을,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현지조사 및 과세자료 제출 열람) ①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지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 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2. 세무부서 등이 소지하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 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서류·기타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기타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그 밖의 상황을 확인하는 일

제25조 (고충민원의 구분) ①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청구내용과 세무부서 등의 회보내용 및 실지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충민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직권시정요구대상(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권한과 관련된 것)
2. 제1호 중 인천광역시남동구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회부대상
3. 다른 지방자치단체 이송대상
4. 시정불가대상

②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권시정 요구대상으로 한다.

1. 세법에 명백히 위배된 처분
2. 조례 및 기본통칙 등에 위배된 처분
3. 과세자료 및 세액 등이 착오로 계산된 처분
4. 민원인이 정당한 증거를 제시한 경우
5. 처분 당시 명백히 사실판단을 그르친 경우
6. 고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판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결정례, 예규 등으로 일반적인 집행례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과 유사하다고 인정되거나 예상되는 사항

③구청장은 제15조의 고충민원분류에 따라 이송대상여부를 결정·처리한다.

④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부대상으로 한다.

⑤고충의 내용이 법령 등의 규정에 명백히 위배되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불가 대상으로 한다.

제26조 (처리절차) ①납세자보호관은 직접 처리할 고충민원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직권시정요구대상 고충민원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세무부서에 통보하여 직권시정토록 한다.
 2. 이송대상 고충민원은 이송사유 및 고충민원서류 일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이송한다.
 3. 위원회 회부대상 고충민원은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4. 시정불가대상 고충민원은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결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한 후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서(별지 5호 서식)』에 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 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 (위원회 회부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1.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처리에 신증을 요하는 경우
2.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 사이에 법령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
3. 기타 구청장이 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지시한 경우

제28조 (처리결과 통지) ①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고충처리결과통지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민원인에게 시정불가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별도의 구체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세히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납세자보호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구술 또는 전화로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상세히 알려 주어야 한다.

제29조 (사후관리) 납세자보호관은 제3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통지 또는 보고한 후 전화로 통지서 수령여부, 처리내용의 이해여부,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처리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30조 (파생자료의 통보 등) ①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파생되는 각종 자료에 대하여 과세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해당 세무부서 또는 해당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징계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절 납세자보호위원회

제31조 (위원회 심의자료의 작성 및 배부) ①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자료(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고충내용, 세무부서 의견, 심리의견 등을 기술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위원회의 심의자료로 활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위원회에 회부할 심의자료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당해 위원들에게 배부한다.

제32조 (위원회 구성) ①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위원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자를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납세자보호관
2. 세무부서장

3. 구청장이 2년 이상의 지방세 경력을 갖춘 5급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1인.
4.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제학·경영학·회계학·기타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경제·사회단체·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그 임직원 등으로 법률·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국세·지방세경력 10년 이상의 전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4인.
-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를 제외한 위원 중 연장자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촉장을 수여한다. 다만, 당해 위원이 그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⑥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보호담당이 된다.

제33조 (위원회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총괄한다.

- ②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있는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위원회를 소집한다.
- ③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위원장이 지정한 날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일정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충내용에 대한

심의로부터 제척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제척원인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당해 고충내용 심의시 참석을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민원인 또는 그 친족

2. 민원인의 사용인이거나 그 최근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3. 민원인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관여하였던 자

⑥회의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자료(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납세자보호관이 설명한 후 위원의 질문과 토론을 충분히 거쳐 의결한다.

⑦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⑧위원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⑨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⑩납세자보호관은 위원회의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민원인에게 위원회 회부사실, 회의일자, 의견진술 신청여부를 전화 등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⑪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 서면으로 하는 경우 동조 제6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적용한다.

제34조 (위원회 의결) ①위원회의 의결(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은 서면 심의도 가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고충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하는 의결(이하 “시정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다만, 고충내용의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부 시정하는 의결(이하 “일부시정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2. 고충내용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 불가하는 의결(이하 “시정불가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 의결사항을 『납세자 보호위원회 의결서(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시정의결(일부시정의결을 포함한다)을 한 고충민원은 고충민원처리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시정하도록 한다.
2. 시정불가의결을 한 고충민원은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③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결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한 후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고충처리결과통보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세무상담 및 사전지도·보호활동

제35조 (세무상담의 기본자세) ①세무상담을 함에 있어서 민원인의 세금에 대한 고충과 애로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경청하여야 하며, 민원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②세무상담은 가능한 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훈령·지침 등 관례적이고 획일적인 처리기준에 의해서는 아니 된다.

③세무상담은 민원인을 고객으로 대우하여 동등한 관계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친절한 자세로 상담에 임하여야 한다.

제36조 (처리기간) 세무상담은 즉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무부서 등과 협의 처리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제37조 (협의처리) ①세무상담 사안 중 세무부서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협의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세무상담처리협조전(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상담협의를 받은 세무부서 등의 장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협의에 응하여 신속한 상담처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 (납세자 여론 정보수집) ①납세자보호관은 세무상담 과정에서 인지한 다음 각 호와 같은 납세자의 여론 정보를 수집한다.

1. 지방세행정에 대한 문제점 및 의견
2. 불합리한 법령·예규·훈령·행정절차 등 지방세행정제도에 대한 건의의견
3. 탈세, 부동산투기, 새로운 세원개발 등에 대한 각종 정보

②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납세자의 여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출장을 명할 수 있다.

제39조 (세무상담 자료비치) ①납세자보호관은 세무상담에 필요한 법령집·예규·훈령집·사례집·각종 홍보물·교육자료 등을 비치하여 세무상담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은 배부 받은 자료를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담당에 대하여 교육을 매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 (세무상담 일지)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관실 상담일지에 일일 세무상담 내용 및 건수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납세자권리현장

제41조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①구청장은 「지방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모든 사항을 분장한다.

제42조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①모든 지방세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3조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①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서(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1. 징수분야 : 고지서 송달(공시송달)의 적정 여부, 압류 및 압류재산매각절차의 준수여부, 출국금지 및 여권발급제한의 적정 여부,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의 신용정보제공 적정 여부, 환급기한의 준수 여부, 물납신청의 수용 여부, 1억원 이상 체납자명단 공개 등
2. 조사분야 :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이행 여부,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여부, 조사연기신청의 수용 여부 및 조사연기 거부의 적정 여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중복조사금지규정의 위반 여부, 세무조사결과의 통지 여부 등
3. 기타 :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관서 제출자료에 대한 진

실성 추정의 침해 여부,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보호를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등

②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무부서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납세자보호관은 그 심사결과 및 납세자 권리침해 사례 및 구제방법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장 지방세 제도개선

제44조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①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 과세전적부심 및 이의신청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합리한 세법 등 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세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 분석하여 현황, 문제점, 개선의견을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서(별지 제11호 서식)』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상담 과정 등에서 수집된 납세자 여론·정보로서 세법 등 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세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처리하고, 기타의 납세자 여론·정보는 세무부서 및 관련부서로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45조 (지방세 제도개선 건의수령) ①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지방세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 등 납세자의 건의사항을 수령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지방세행정 제도개선 건의내용에 대하여 7일 이내에 검토의견 및 처리방향 등을 납세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7장 보고 및 점검

제46조(보고) 구청장은 매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인천광역시시장에게 고충민원접수 및 처리건수, 세무상담 실적,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서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납세자 보호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때는 설치한 때부터 시행하되, 제3장제2절 중 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은 최초 구성된 때부터 시행한다.

②(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접수 되는 고충민원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과세처분·세무조사 중지명령 및 시정·소명요구서

문서번호 :

담 당

납세자보호관

구청장

수 신 : 세무과장

제 목 : 과세처분·세무조사중지 및 시정·소명요구서

귀 부서의 아래 (예상) 과세처분·세무조사에 대하여 과세처분중지명령 · 세무조사중지명령 및 시정요구 · 소명요구를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자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예상)과세처분
또는 세무조사
내용

과세처분·세무
조사중지 또는
시정요구·소명
요구 사유

과세처분·세무
조사중지 내용
또는 시정요구·
소명요구 내용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인)

【별지 제2호 서식】

고충처리기한연장통지서

민 원 인	주 소 (사 업 장)			상 호	
	성 명		신 청 일 자	. . .	
당 초 처 리 기 한			처 리 예 정 기 한		
기한연장사유					
실지조사 등의 소요 예상일수					
귀하가 제출하신 고충민원은 위와 같은 사유로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여 부득이 처리기한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					
이 통지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남세자보호관 ○○○ (전화번호: 000-000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 서식】

고충민원 신청서

민 원 인	주 소 (사 업 장)		전화번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
충
내
용

※고충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위와 같은 사유로 고충민원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1.

2.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작성자)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

문서번호 :

담당

납세자보호관

수 신 : 세무과장

제 목 :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

아래 민원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귀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니 . . . 까지 당초처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해 고충의 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시정하고 그 결과를 . . . 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 원 인	주 소 (사업장)			전 화 번 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고
충
내
용

첨부 : 고충민원서 사본 1부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인)

【별지 제5호 서식】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

담당자

○○담당

세무과장

수 신 : 납세자보호관

참 조 :

제 목 :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

아래 민원인이 제출한 고충민원을 아래와 같이 의견(직권처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민 원 인	주 소 (사 업 장)	전화번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 충 내 용	
------------------	--

의 견 및 처 리 내 용	
---------------------------------	--

첨부 : 경정결의서 등 관계증빙서류.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세무과장 (인)

【별지 제6호 서식】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자료

		담당자	납세자보호관	구청장

(접수번호 :)

민 원 인	주 소 (사업장)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충요지				
처분내용				
주무과 의 견				
심 리 · 판 단	가. 쟁 점 나. 사실관계 다. 관련법령 라. 심리의견 ※별지작성 가능			
첨부서류 : 1. 2.				

【별지 제7호 서식】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서

(접수번호 :)

민 원 인	주 소 (사 업 장)			전화번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 충 내 용 (요지)					
의 결 내 용	시정, 일부시정, 시정불가				
의 결 이 유	※ 별지작성 가능				

년 제 회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상정된 안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첨부 1. 회의록
2. 심의자료

【별지 제8호 서식】

고 충 민 원 처 리 결 과 통 지 서

문 서 번 호			발 송 일 자	. . .
민 원 인	주 소 (사 업 장)			
	상 호		성 명	
	신 청 일 자	. . .	처 리 일 자	. . .
고 충 내 용				
처 리 내 용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				
이 통지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 (전화번호:)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9호 서식】

세무상담 처리 협조전

아래 민원인으로부터 세무상담이 제기되어 귀 부서에 이첩하니, 상담내용을 검토 후 민원인에게 알려주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제목			처리기한		

상
담
요
지

상담자 성명 :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인)

【별지 제10호 서식】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서

		담 당	납세자보호관	구청장

작성일자 :

구분	주요 심사 항목	심 사 결 과
징수 분야	1. 고지서(공시송달, 독촉장송달 포함)송달 적정 여부 2. 압류·압류재산매각절차 준수여부 3. 출국금지·여권발급제한 적정여부 4.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신용정보업자 제공 적정 여부 5. 환급기한 준수여부, 물납수용여부등	
세원 관리 분야	1. 고지전과세자료처리 결과통지절차 준수여부 2.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발송절차 준수여부 3. 기 타	
조사 분야	1. 세무조사 사전통지 이행여부 및 납세자권리 헌장 교부여부 2. 조사연기신청 수용여부 및 거부 적정여부 3.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여부 4. 중복조사금지규정 위반여부 5. 세무조사결과 통지여부 6. 기 타	
기타	1. 납세자의 성실성 및 세무관서 제출자료에 대한 진실성 추정 침해여부 2.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보호를 받을 권리 침해 여부 3.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 을 권리 침해여부 4.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적법하고 신속하 게 구제받을 권리 침해여부	
첨 부	납세자 권리침해 사례 및 구제방법	

【별지 제11호 서식】

지방세행정 제도개선 의견서

	담 당 자	납세자보호관	구청장
작성일자 :			
제 목 :			
현 황			
문 제 점			
개 선 방 안			
기 대 효 과			

이 조례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지방세법」 제71조의2(납세자보호관)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 함으로써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및 납세자보호 위원회를 설치하여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현장의 준수여부와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업무를 전담 추진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구제절차에 있어 사전적 구제 수단의 제도 개선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에 기여코자 함

□ 주요내용

-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하여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 하도록 함
-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부여
- 고충민원의 대상은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 사항을 대상으로 함
-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사실 판단이 복잡한 경우 및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 사이에 법령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 의결 기능을 담당
-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6년 12월 8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83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건축연면적”이라 함은 “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허가된 면적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

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교부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미집행 기반시설 부지의 매입비
3.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비
4. 기타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6조(건축행위의 통지 등)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건축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행위 허가시 기반시설부담금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시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부담금 부과내역 등 통보) 구청장은 분기별 부담금의 부과 징수실적 및 납입·물납 실적 등을 다음 분기 첫째달 10일까지 인천광역시장에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법률 제7848호 2006.1.11 공포, 2006.7.12시행)됨으로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함이며
- 남동구로 귀속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임.

□ 주요내용

-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교부금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당행 특별회계의 이자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
-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출
 -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 미집행 기반시설 부지의 매입비
 -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비

공	고
---	---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138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4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구세 감면에 대한 사무를 적정하게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한센정착농원, 종교단체의 의료업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규정(안 제2조 내지 안 제5조)
- 평생교육시설 등 및 문화재에 대한 감면 규정(안 제6조 내지 안 제8조)
- 임대주택 및 미분양 주택,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안 제9조 내지 안 제12조)
- 지방공사 및 신용보증재단,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규정(안 제13조, 안 제16조, 안 제23조)
- 아파트형공장 및 시장정비사업, 유통산업지원, 외국인투자유치지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등에 대한 감면 규정(안 제14조 내지 안 제15조, 안 제19조, 안 제21조 내지 안 제2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6년 12월 26일까지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참조:세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53-2363, FAX 453-236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06년 12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구세 감면에 대한 사무를 적정하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체계 : 제5장, 제29조, 부칙 제3항, 서식 2.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한센정착농원, 종교단체의 의료업,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감면 규정(안 제2조 내지 안 제5조)
- 평생교육시설 등,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 문화재에 대한 감면 규정(안 제6조 내지 안 제8조)
- 임대주택 및 미분양 주택, 사권제한 토지 등,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규정(안 제9조 내지 안 제12조)
- 지방공사 및 신용보증재단,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규정(안 제13조, 안 제16조, 안 제23조)
- 아파트형공장 및 시장정비사업,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유통산업지원, 외국인투자유치지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규정

(안 제14조 내지 안 제15조, 안 제17조, 안 제19조, 안 제21조 내지 안 제22조)

-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및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규정

(안 제18조 및 안 제20조)

- 직접사용의 의미 및 감면신청,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에 대한 규정(안 제24조 내지 안 제29조)

3. 본 문 : “별첨”

4. 참고사항

-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 행정자치부 조례 표준(안)
- 입법예고 : 연월일 ~ 연월일(의견없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익상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 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3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취득·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제7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 보호를 위하

- 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인천광역시장에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 ②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9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 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0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

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제11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써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12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3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 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6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7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인천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8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9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0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21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의5 내지 제2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의5 내지 제2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22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3조(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는 부동산 및 선박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5장 보 칙

제24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5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

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8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7.1.1부터 적용 한다.

②(한시규정) 이 조례는 2009년12월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주소				
감면내용	세목	연도/기분	당초세액	감면세액
감면사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서식]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수신자

제 목 지방세 감면 통지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①년도	②기분	③세목	④과세번호	⑤당초 결정세액	⑥감면 결정세액	⑦차인납부세액	⑧납기한
결정사유							

끝.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담당자

검토자

결재권자

협조자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 행 일 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 수 일 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지 방 세 법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8조 (수익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불균일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 자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6, 1998.12.31>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1387호

2007년 동계 부업대학생 모집 공고

남동구청에서는 대학생에게 사회 경험을 쌓는 한편 올바른 근로 및 봉사를 통한 자립정신을 배양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2007년 동계 부업대학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 모집기간 : 2006. 12. 18 ~ 12.22 (5일간)
- 접 수 처 :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
또는 남동구청 총무과 방문 접수
- 근무기간 : 2007. 1. 8 ~ 2. 9 / 09:00 ~ 18:00 (25일간, 주5일 근무)
- 모집인원 : 45명 內
- 보 수 : 700,000원 (1일 28,000원) - 교통비, 식비포함
- 근무내용 : 현장근무 및 행정업무 지원
- 자격요건
 - 2년제 대학이상에 재학하고 있는 남,여 학생으로서(휴학생제외)
 - 모집공고일(12월 7일) 현재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선발방법
 - 모집인원 이내 접수시 적격자 중 전원 선발
 - 모집인원 초과 접수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우선 선발한 후 나머지 학생은 전산추첨에 의해 선발
 - 부업대학생 신청서 기재사항중 거주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신청에서 제외
- 추첨일시 및 장소
 - 추첨일시 : 2006. 12. 27(수) 10:00
 - 추첨방법 : 추첨프로그램에 의한 전산추첨
- 최종선발자 공고 : 2006. 12. 28(목) 남동구 홈페이지 새소식란
- 서류제출
 - 선발자에 한해 재학증명서 1부 제출 (미제출시 선발자격 상실)
 - 선발자의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제출기한 : 2007. 1. 2 ~ 1. 4(3일간) 09:00 ~ 18:00
 - 제 출 처 : 남동구청 총무과 자치지원팀
- 기타 문의사항은 남동구 총무과(☎ 453-2230)로 문의바랍니다.

2006. 12. 7.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1391호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개발제한구역내 경계표석 설치공사
- 공사위치 : 남동구 관내 전재울지구 외 14개 지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 공사개요 : 경계표석 설치 635EA
- 설계금액 : ₩132,803,000원(추정가액 120,730,000원 부가가치세 12,073,000원)
- 기초금액 : ₩132,803,000원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6년 12월 07일(목) 09:00~ 12월 12일(화)14:00
-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6년 12월 12일(화요일) 15:00
-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지역제한 및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내에 주된 사업소를 갖추고
-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로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소지업체

4.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 기초금액(W132,803,000)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이 중 투찰자에 의해 다 빈도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7.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한(87.745%)적 최저가로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83호, 2005. 12. 30)에 의거 수행능력 평가점수와 가격입찰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기준 : 부채비율 71.37% 유동비율 206.84%

8.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계약사항으로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5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경영재정과 경리팀(032-453-2262) 또는 도시계획과 그린벨트관리팀(032-453-2972)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namdong.incheon.kr>)의 입찰공고란에 게재하며,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06년 12월 06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1392호

(긴급)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개발제한구역내 경계표석 설치 측량용역
- 용역위치 : 남동구 관내 전재울지구 외 14개지구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 용역개요 : 기준점 측량 635개소
- 설계금액 : ₩86,108,000원(추정가액 78,280,000원 부가가치세 7,828,000원)
- 기초금액 : ₩86,108,000원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6년 12월 07일(목요일)09:00~12월 12일(화요일)15:00
-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6년 12월 12일(화요일) 16:00
-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지역제한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업소를 갖추고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 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로
-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 합니다.

4.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 기초금액은 금액인 (₩86,108,000)의 $\pm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이 중 투찰자에 의해 다 빈도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7.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한(87.745%)적 최저가로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82호) 및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20호)의거 수행능력 평가점수와 가격입찰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계약사항으로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5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경영재정과 경리팀(032-453-2262) 또는 도시계획과 그린벨트관리팀(032-453-2972)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인천광역시남동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namdong.incheon.kr>)의 입찰공고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6년 12월 06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1396호

차령초과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 예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2006. 12. 22일까지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압류에 관계없이 폐차 말소등록 처리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06. 12. 08 ~ 2006. 12. 22 (15일간)

2. 대상 자동차

신청대상차량			이해관계내용	이해관계인	송 달 지
자 동 차 등록번호	성명	사용본거지			
09보9078	김영식	계양 효성동 232-7 삼화연립 B-203	전주지방법원 (98카단14066)	장금부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1596-32호
인천30무6497	김재홍	남동 만수1동 주공 (아)708동 1404호	인천지법부천지원 (98카단1098)	박성민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617-51호
인천33누7895	이동춘	부평 부평동 768-81 로얄빌라 201호	인천지법부천지원 (97카단13268)	나형주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70
인천5거1670	김흥열	남동 간석동 428-2 성지주택101호	인천지방법원 (2001카단4761)	박덕운	남구 주안동 1487-7호

3.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과 차량등록팀(☎453-2941)

2006. 12. 08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140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지하수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6년 12월 06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지하수조례제정(안)

2. 입법취지

- 지하수법 제33조의3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및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지하수를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중 소규모시설에 대하여 설치기준 완화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나 신고시 예치하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지하수 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지하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 포함 11인 이내로 규정함(안 제7조)
-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으로 규정함(안 제8조)
-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지하수이용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6. 12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에게 (참조 : 건설과, 전화 : 453-2732)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6년 12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지하수법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부과·징수)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및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지하수를 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중 소규모시설에 대하여 설치기준 완화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나 신고시 예치하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지하수 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지하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 포함 11인 이내로 규정함(안 제7조)
-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으로 규정함(안 제8조)
-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지하수이용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 본 문 : “붙임참조”

■ 참고사항

- 『지하수법』 제30조의3. 시행령. 시행규칙.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법을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 건설교통부 “지하수 조례” 표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개발·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라 함은 지하수법(이하“법”이라한다)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등 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남동구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라 함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 2 장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5조 각호 이외의 부분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 한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타펌프(자흡식자동펌프)를 지상에 설

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타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이행보증금의 금액과 예치 시기는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의한다. 다만, 「규칙」 제17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0
2.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구청장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수질측정시설”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3. 전시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제 3 장 지하수관리 위원회 설치·운영

제6조(지하수관리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남동구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남동구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

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남동구의회 의원
2. 남동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의 임·직원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동구 소속 공무원 및 남동구구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서기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장 특별회계 설치 및 재원의 관리

제11조(특별회계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1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아래와 같이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 보조금
2.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6. 지하수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가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예치한 이행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이를 특별회계에 예탁한다.

7. 법 제39조 및 제40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제1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 내지 제8호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3. 기타 구청장 및 위원회에서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

제14조(회계관직 공무원) ①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제12조 및 제13조의 회계 관직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별회계 징수관 : 소관사무의 국장
2. 특별회계 경리관 : 소관사무의 국장
3. 특별회계 분임징수관 : 소관사무의 과장
4. 특별회계 분임경리관 : 소관사무의 과장
5. 특별회계 채권관리관 : 소관사무의 과장
6. 특별회계 채무관리관 : 소관사무의 과장
7. 특별회계 지출원 : 소관사무의 담당
8. 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 소관사무의 담당
9. 특별회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소관사무의 담당
10. 특별회계 물품출납원 : 소관사무의 담당

②직무의 위임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사무취급 예)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6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 방법 등) ①구청장은 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거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3. 기타 구청장이 별도 규정하는 개발·이용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월별 또는 분기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45를 곱한 것으로 한다.

③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기본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산정금액이 기본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한다.

④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도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지하수개발·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 하여야 한다.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2)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수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의한다.

제18조(가산금) ①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9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 5 장 별 칙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제3항 별표8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부과기준에 의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

제21조(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는 위반사실·과태료 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 함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을 말한다.

제22조(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①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

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①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부과권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과태료의 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 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한다.

제25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부과·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제 6 장 보 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반행위 조사서

1. 대 상 자

가. 법인(상호)명 :

나. 대 표 자 :

다. 법 인 번 호 :

라. 주민등록번호 :

마. 소 재 지 :

바. 연 락 처 : (전화) (팩스)

2. 위반내용

3. 위반사유(육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술)

200 년 월 일

진술인 : (인)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처분 통지서

시 행 :

수 신 :

제 목 : 과태료 처분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하수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지하수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200○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첨부 : 과태료납부통지서 1부

200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 처분 통지서				
납 부 의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위 반 사 항				
채 납 과 태 료 금 액	금 (₩	원)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0○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200○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부 과 기 준		납부통지서번호	
	고지받은일자		과태료 금액	
	과태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지하수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지서

시 행 :

수 신 :

발 신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하수법 제41조제3항과 관련입니다.

2. 지하수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고지일자		과태료금액	
	이의제기일자		이의제기 사유	

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1부.
2. 담당공무원 의견서 1부.

고	시
---	---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06 - 59호

가스관련 검사기관에의 권한위탁 및 검사대행에 관한고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6조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1조제3항, 「도시가스사업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의거 검사기관별 관별 검사의 권한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 12. 08.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6조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1조제3항, 「도시가스사업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의거 검사기관별 위탁하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는 권한

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중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외의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냉동기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정설비의 검사

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

신고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

마.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2. 공인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권한

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중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외의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냉동기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정설비의 검사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3.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권한

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정설비의 재검사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폐지)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2-7호(2002. 1. 16)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끝.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06 - 60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 고잔동 소1-1호선)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명 : 고잔동 소1-1호선 도로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합니다.

2006. 12. 8.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의시행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223-5번지 일원(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1) 종 류 : 도로(고잔동 소1-1호선)
 - (2) 명 칭 : 고잔동 소1-1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B = 10m, L = 615m 중 L=3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1) 성 명 : 강 병 자
 - (2) 주 소 : 인천광역시 남구 송의동5-48번지
5.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있음)
 - 당초 : 2006. 07 ~ 2006. 09. 30
 - 변경 : 2006. 07 ~ 2006. 12. 31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06 - 61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 고잔동 소1-1호선) 실시계획(변경) 인가(비관리청)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 고잔동 소1-1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건축과(☎032-453-2782) 및 도시계획과(☎032-453-29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12. 8.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의시행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223-5번지 일원(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1) 종 류 : 도로(소1-1호선)
 - (2) 명 칭 : 고잔동 소1-1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소로1-1호선 : B=10m, L=615m 중 L=3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1) 성 명 : 강 병 자
 - (2) 주 소 : 인천광역시 남구 송의동 5-48번지
5.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있음)
 - 당초 : 2006. 07 ~ 2006. 09. 30
 - 변경 : 2006. 07 ~ 2006.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있음) : 「별첨」
7.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별첨」
8. 첨 부 : 관계도서(게재 생략)

